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 심사대상기관 15,386개소 중
총 1,489개소(미신청 1,326개소, 부적격 163개소) 지정효력 만료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심사 진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386개소 중 1,326개소가 미신청하고 163개소가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되어 총 1,489개소가 지정 효력 만료 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매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하여, 부적격 기관은 갱신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을 만료시키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9.12.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여 2025년 12월 지정갱신제가 첫 시행되게 되었다.

특히 지정갱신제가 2019년 12월 도입됨에 따라 6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 제도 시행 이전 지정된 약 1만 5천 개 기관(전체기관의 50%)의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6월부터 갱신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5년 심사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386개소 중 1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하였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관 14,060개소 중 1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은 98.8%였으며, 시설급여기관은 99.2%(3,546개소 중 3,519개소), 재가급여기관은 98.7%(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 결과 부적격 기관은 총 163개소로, 미신청 기관 1,326개소를 포함해 총 1,489개소(심사대상 기관의 9.7%)가 정비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건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정갱신 심사 시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인권보호 등), ▲자원관리(운영위원회 구성,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인력관리(적정 급여수준 준수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매우 나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심각한 경우는 대면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요 부적격 사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었던 54개소는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갱신심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항목을 개발하여 지표를 보완하고,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자체 보완 기회 부여 및 심층 심사 체계 마련,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및 미신청 기관의 폐업 절차 진행, 급여

제공 관련 자료 이관 등 심사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라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요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통계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044-202-3510)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044-202-3523)



□ **추진 배경**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신규기관에 대한 지정제 강화* 및 기존기관 지정갱신제 도입('18.12 법 개정, '19.12 시행)
- * 심사 기준에 운영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역, 기관 운영계획, 장기요양급여 수요 반영 등
- **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19.12.12 이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25.12.11에 유효기간 일제 도래하여, '25년 첫 갱신심사 시행('25.12.)

□ **지정(갱신)제 주요내용**

- (대상)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
- (시행시기) '25년 12월부터 지정갱신제도 현장 적용
- (신청기간)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심사기준) ①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②시설·인력 기준, ③평가결과, ④급여 제공 이력, ⑤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처리기한) 유효기간 내에 지정갱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 지정의 효력 지속
- (심사방식)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과 동일하게 관할 시·군·구의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적격여부 결정 후 기관에 통보
- (사후관리) 부적격 기관이 결과에 대한 이의 의견이 있을 시 검토 후 통보, 폐업 절차 안내 및 수급자 전원 조치(지자체), 급여제공 기록지 등 자료 이관 조치 안내(건보공단)

붙임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관련 통계

□ 시설 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현황

※ 지정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12.31. 이전인 장기요양기관

'26.3.31. 기준(단위: 개소, %)

지정갱신 대상기관		갱신 신청 기관			갱신 미신청 기관
		합계	심사완료		
			적격	부적격	
전체	15,386	14,060	13,897	163	1,326
	(100.0)	(91.4)	(90.3)	(1.1)	(8.6)
시설	3,649	3,546	3,519	27	103
	(100.0)	(97.2)	(96.4)	(0.7)	(2.8)
재가	11,737	10,514	10,378	136	1,223
	(100.0)	(89.6)	(88.4)	(1.2)	(10.4)

주: 1) 시설급여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2)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 등을 제공

□ 2026년 월별 지정유효기간 만료 기관 수

(단위: 개소)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1,546	85	65	128	140	120	150	118	138	141	137	151	173
시설	356	19	25	35	33	25	36	26	21	28	33	33	42
재가	1,190	66	40	93	107	95	114	92	117	113	104	118	131

□ 장기요양기관 현황

'25. 12. 31. 기준 (단위: 개소, %)

총계	시설급여 기관수			재가급여기관수
	소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9,734	6,361	4,802	1,559	23,373
100.0	21.4	75.5	24.5	78.6

주: 1)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기관수: 장기요양기관 기호 기준(운영 기준, 휴·폐업 제외)
2) 재가급여 종류별 기관수: 각각의 급여종류별 현황(장기요양기관 기호 중복 포함)